



NGO 를 위한



ECOSOC

의 협의적 지위에 관한
안내서

NGO

를 위한

ECOSOC

의 협의적 지위에 관한
안내서



유엔
뉴욕, 2011

목차

유엔 (UN)과 NGOs (비정부기구)	1
ECOSOC과 산하 기관 (Subsidiary bodies)	3
ECOSOC 협의적 지위 (Consultative status)	6
유엔 구역 출입증 (UN grounds pass)	8
행사 참가 (Events participation)	11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11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12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12
원주민 문제 상설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13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3
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14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14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15
과학기술개발위원회(Commissions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15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	16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17
서면 의견서 (Written statements)	19
구두 의견서 (Oral statements).....	22
유엔에서 NGO 행사 조직하기	24

협의적 지위 신청 절차 (The application process)	26
1. NGO 조직 프로필 작성	27
2. 설문지 및 관련 문서를 포함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29
3. 신청서와 문서 제출이 완결되었는지에 관하여 NGO 담당과의 신청서 1차 검토	32
4. 매년 1월에 열리는 정기 회의 또는 5월에 열리는 속개 회의 기간 동안, ECOSOC의 NGO 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	33
5. NGO 위원회에 의한 추천 권고	34
6. 매년 7월 신청서 승인 여부에 대한 ECOSOC의 결정 완료	36

4년 보고서 (Quadrennial reports)	38
연락 정보 및 유용한 링크	41



유엔 (UN)과 NGOs(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NGO)는 1945년 유엔 (UN, 국제연합)의 설립 이후, 유엔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NGO는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유엔 사무국, 프로그램, 기금 및 기구들과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 NGO는 정보보급, 인식제고, 개발교육, 정책옹호, 공동운영 프로젝트, 정부간 프로세스 참여 그리고 서비스 및 기술 전문성 제공 등 많은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설립에 관한 유엔 헌장 (United Nations Charter) 7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국제 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된 국제 연합 회원국과의 협

의 후에 국내 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유엔 헌장, 제10장, 71조

유엔 헌장 71조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적절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다. 현재 ECOSOC과의 협의적 관계에 관한 사항은 ECOSOC 결의안 1996/31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바, 이 결의안은 협의적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요건, 협의적 지위에서의 NGO의 권리 및 의무, 협의적 지위의 철회 또는 정지 절차, ECOSOC 비정부기구 위원회(the Committee on NGOs)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협의적 관계를 지원하는 유엔 사무국의 책임 등을 기술하고 있다.

유엔은 전체 유엔 체제 및 그 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유엔 기구들은 NGO의 향상되고 보다 전략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유엔과 NGO간 관계 강화의 필요성은 2000년 9월에 발표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비롯하여 여러 문서에서 강조되었다. NGO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유엔 회원국들의 약속은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도 재확인되었다.

ECOSOC은 초기부터 NGO가 유엔체제에 진입하는 주요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ECOSOC은 NGO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가진 유일한 유엔의 주요 기관이다. 1946년 41개 NGO가 ECOSOC로 부터 협의적 지위를 부여 받았다. 1992년까지 700 개 이상의 NGO가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3,400개 이상에 이른다.



ECOSOC과

산하 기관 (Subsidiary bodies)

경제사회이사회(경사리, ECOSOC)는 14개 유엔 전문 기구, 기능 위원회, 그리고 5개 지역 위원회의 경제, 사회 및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주요 기관이다. 국제 경제 및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회원국 및 유엔 체제에 제공되는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핵심 포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ECOSOC은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의 의석은 지리적 배분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14석, 아시아 국가 14석, 동유럽 국가 6석, 중남미 국가 10석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지역 국가 13석으로 배정된다.

ECOSOC의 활동은 여러 차례의 회기 및 사전 준비 회의, 시민사회 회원들과의 원탁 회의 및 패널 토론 등을 통해 1년 내내 진행된다.

일 년에 한번 7월에 개최되는 4주간의 실질 회기는 뉴욕과 제네바에서 번갈아 열린다. 이 연례 회의는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i) 고위급 회의 (ii) 조정 회의 (iii) 운영 활동 회의 (iv) 인도적 지원 회의 그리고 (v) 총회 등을 포함한다.

연례각료급검토회의(Annual Ministerial Review, AMR)는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ECOSOC의 연례 고위급 회의 기간 동안 개최, 유엔 개발 의제(UN Development Agenda, UNDA)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이 회의는 지난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나누고 성공 사례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지구적인 고위급 포럼으로서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협력포럼(The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 또한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의 이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이행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 포럼은 유엔체제 내의 핵심 기관이며, 국제개발 협력의 효과 및 일관성에 관한 전지구적 논의와 정책 검토를 위한 주요 포럼이다. 개발협력포럼은 ECOSOC의 고위급 회의의 틀 내에서 2년에 한번 열린다.

전체 ECOSOC 산하에는 이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많은 보조기관들이 있다. ECOSOC은 정책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모든 보조기관들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일단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NGO는 ECOSOC의 보조기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COSOC 기능 위원회 (functional commissions)

- »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
- » 인구 및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 »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 »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 » 과학기술개발위원회(Commissions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 »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ECOSOC 지역 위원회 (regional commissions)

- »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 »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 » 유럽경제위원회(ECE)
- »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 »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기타 기관 (other bodies)

- » 원주민 문제 상설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 »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 » 회기 및 상설위원회(Sessional and standing committees)
- » 전문가, 임시 및 관련 기관들





ECOSOC 협의적 지위 (Consultative status)

ECOSOC는 NGO의 참여를 위한 공식적 체계를 가진 유엔의 유일한 주요 기관이다.

이러한 인증(accreditation) 체계는 유엔과 NGO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유엔과 비정부기구 간의 협의적 관계”에 관한 결의안 1996/31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사회이사회 또는 산하 기관이 한편으로는 협의적 약정이 체결된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역량을 가진 기구들로부터 전문적 정보 또는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여론을 대표하는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 및 국가적 기구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적 약정

을 체결한다.”

-ECOSOC 결의안1996/31,
part II, paragraph 20

ECOSOC은 NGO로부터 귀중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반면, NGO 또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NGO는 UN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전문적인 역량, 실무 경험 및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NGO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 ▶ 해당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전문가 분석 제공
- ▶ 조기 경보 기관으로서 역할
- ▶ 국제적 협약에 대한 감시 및 이행의 지원
- ▶ 관련 이슈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 지원
- ▶ 유엔의 목표와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 담당

▶ 기구 행사들에서 중요한 정보로서 기여

반면에, ECOSOC은 NGO에게 그들의 견해가 전지구적으로 경청되고, 유엔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 국제 회의 및 행사에 참여
- ▶ 국제 행사에서 서면 및 구두 의견서 발표
- ▶ 부대 행사의 조직
- ▶ 유엔 구역 출입
- ▶ 네트워크 형성 및 로비 활동의 기회를 가짐

ECOSOC은 협력 대상기구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기금 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러나 ECOSOC 행사에서 사회적 네트워킹은 NGO들로 하여금 접촉 및 지식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들과 잠재적 파트너십 및 공동작업을 모색하도록 해준다.

유엔 구역 출입증 (UN grounds pass)

ECOSOC과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는 대표를 지정하여 유엔 구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연간 출입증 (annual pass)을 획득할 수 있다. 각 NGO의 최고행정책임자(CAO)와 대표 또는 최고관리자에게 발행되는 출입증에 더하여, 뉴욕, 제네바 및 비엔나에 각기 최대 5장씩 발행되어 각 NGO에게 총 7장의 출입증이 발행될 수 있다. 1일간 그리고/또는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출입증도 특정 행사를 위해 발행될 수 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 연간 출입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한다.

» 먼저, (NGO Branch¹)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NGO 조직 웹 페이지에 로그인 한다 [연락정보(Contact information)]

¹ NGO담당과 (NGO Branch)는 뉴욕의 유엔사무국의 사회경제국 (the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Affairs of the UN Secretariat)의 부서이다.

및 유용한 링크 (useful link) 참조]

- » 둘째,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 탭 아래에 있는 “지정 (Designations)”으로 간다
- » 셋째, 지정하고자 하는 대표들을 사전 등록 (pre-register) 하기 위해 “뉴욕(New York)”을 클릭한다

일단 사전 등록이 되면, 각 NGO 대표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ID card)과 연간 출입증을 위해 최대 5명까지 (최고행정책임자와 대표의 2개를 추가) 지정하는 소속 NGO의 최고책임자/대표의 서명이 있는 공식 서한을 가지고, NGO 담당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유엔 구역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출입증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NGO는 또한 지정된 대표가 더 이상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NGO담당과에 통지함으로써, 최신의 공식 대표 명단이 항상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통행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 참가

(Events participation)

ECOSOC의 인증을 받은 NGO는 ECOSOC, 기능 위원회 및 기타 보조 기관의 정기 회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열리는 회의에서 NGO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공식 회의에 참가
- » 회기 시작 전 서면 의견 제출
- » 구두 의견 발표
- » 공식 정부 대표단 및 다른 NGO 대표들과의 만남
- » 회기 중 열리는 병행행사의 조직 및 참여
- » 토론, 상호 대화, 패널 토론 및 비공식 회합 참가

여러 기구들이 NGO의 참가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ECOSOC의 인증을 받고 또한 유효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NGO만이 그들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개발위원회(CSD)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또한 지구정상회의(the Earth Summit) 로도 알려짐) 의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1992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이 회의에서 전세계 지도자들은 기후변화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물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서명하였고, 리우 선언(the Rio Declaration)과 산림 원칙(the Forest Principles)을 발표하였으며, 21세기에 지속 가



능한 개발 달성 계획으로서 300 페이지 분량의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CSD는 뉴욕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연례 회의를 개최하며, 2년 주기로 매 주기마다 구체적인 주제별 및 공통의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 CSD는 NGO의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여성지위위원회(CSW)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국제 정책 입안 기구이다. 여성지위위원회는 뉴욕에서 10일 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의 일정으로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의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성 평등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파악하며,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한다.

NGO의 적극적인 참여는 CSW



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NGO는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으로 대표되는 여성 역량 강화와 양성 평등에 대한 현 국제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NGO는 국제 및 국가 지도자들이 행동 강령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해 나가도록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1995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이후, 사회개발위원회(CSocD)는 코펜하겐 선언 및 행동계획(the Copenhage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후속 조치와 이행을 관할하는 핵심 유엔 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사회개발위원회는 뉴욕에서 보통 2월에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1995년 이후 매년,



사회개발위원회는 코펜하겐 정상회의 결과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핵심 사회개발 주제들을 다루어왔다. 이런 활동은 2년 주기로 조직되며 검토 및 정책 분야가 포함된다.

원주민 문제 상설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유엔 원주민 문제 상설포럼 (UNPFII)은 경제 및 사회 발전, 문화, 환경, 교육, 보건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원주민 문제를 논의하는 임무를 가진 ECOSOC의 자문 기구이다. 이 포럼은 뉴 협의적 지위 정지에 대해 통보한다. 뉴욕에서 보통 5월에 10일 간의 일정으로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각 회의는 주제 별로 구체적인 이슈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2010년 9차 회의의 주제는 “원주민: 문화와 정체성이 동반되는 발전, 그리고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제 3조와 제 32조”이었다.



인구 및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인구 및 개발위원회(CPD)는 ECOSOC에게 인구 문제 및 추세, 인구 및 개발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해 지원 및 조언을 하고, 또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인구 개발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CPD는 1994년까지는 2년 또는 3년 마다 회의를 개최했으나, 그 이후로는 보통 4월 초에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각 회기마다 특정 주제를 토론하는데, 2011년 가장 최근에 열린 회기에서는 “출산, 생식 건강 그리고 개발(Fertility, reproductive health, and development)”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유엔 산림포럼(UNFF)의 주요 목표는 모든 종류의 산림의 관리, 보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과 이런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정치적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2007년 이후, 포럼은 2년 주기로 최장 2 주간의 일정으로 조직되어 왔다. 각 회기는 포럼의 핵심 주제를 기반으로 열린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는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에 관해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유엔 체제의 핵심 기구이다. 위원회는 인신매매, 초국가적 범죄 및 테러리즘 예방을 포함하여 형사 사법 문제에 대한 국제 정책 및 권고 사항을 수립한다.

위원회 임무의 우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 조직 범죄, 경제 범죄 및 돈 세탁을 포함한 국가 및 초국적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적 조치
- » 환경 보호에 있어서 형사 법의 역할 강화
- » 청소년 범죄 및 폭력을 포함한 도시 지역의 범죄 예방
- » 형사 사법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및 공정성 향상

이러한 주요 이슈들이 비엔나에서 4월 및 5월 경에 열리는 연례 회의에서 토론 주제로 선택된다.

마약위원회(Commission Narcotic Drugs)

1946년에 설립된 마약위원회(CND)는 마약 관련 문제에 대한 유엔의 핵심 정책 입안 기구이다. 위원회는 전 세계의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 마약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마약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한다.

위원회는 마약 관련 국제 협약, 합의안의 적용 및 이행 감독에 관하여 ECOSOC을 지원한다. 또한 위원회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원료 물질의 통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조언한다.

위원회는 제네바에서 보통 3월에 8일 이내의 일정으로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과학기술개발위원회 (Commissi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과학기술개발위원회(CSTD)는 유엔 총회 (GA) 및 ECOSOC에 조언을 주기위해 1992년에 설립되었고, 포럼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과학 기술 관련 의문점들 및 이런 의문점들이 발전에 미치는 함의의 조사검토
- » 특히 개발도상 국가와 관련하여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 강화
- » 유엔체재 내의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 및 지침 수립

위원회는 제네바에서 5월에 1주일 간의 일정으로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

유엔 통계위원회(UN StatCom)은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ECOSOC을 지원한다.

- ▶ 국가 통계 발전 및 국가 간 통계의 호환성 개선 촉진
- ▶ 전문 기구들간의 통계 업무 조정
- ▶ 유엔 사무국의 핵심적 통계 지원업무 개발
- ▶ 유엔 기관들에게 통계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배포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에 관해 조언
- ▶ 전반적인 통계 및 통계 방법의 개선 촉진

위원회는 뉴욕에서 2월 말에 4일 간의 일정으로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인권이사회(HRC)는 인권 문제를 관할하는 유엔의 주요 정부간 기구이다. 이사회는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매년 최소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역할은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다루고, 전 인류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유엔 체제 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과 주류화의 실현을 포함한다.

지정된 회기(정기 회의) 동안, 이사회는 산하 기관의 인권 절차 및 매커니즘 활동을 검토하며, 또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패널 토론과 특별 행사를 조직할 수 있다.

일반 회의 이외에, 이사회는 특정 국가 또는 주제별 이슈와 관련된 특별 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인권 이사회가 ECOSOC의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오직 ECOSOC의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만이 인권이사회 회의 참관인(observer)으로서 참석하기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참관인으로서, NGO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 제소 절차(the Complaints Procedure) 관련 인권이사회가 심의중인 것을 제외, 인권 이사회의 모든 회의 참가 및 참관
- » 인권 이사회에 서면 의견서 제출
- » 인권 이사회에 구두 의견 개진
- » 유엔 192개 전 회원국의 인권 보고서를 매 4년 단위로 한번씩 검토하는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참가
- » 토론, 상호 대화, 패널 토론 및 비공식 회의 참가
- » 인권 이사회 업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병행 행사” 조직

인권 이사회의 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ECOSOC의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 충분한 기간 내에 제네바의 유엔 사무국에 인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인권 이사회의 웹 페이지에서 NGO 참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 사회 단체들의 공헌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늘날, 시민 사회 단체들의 견해, 실용적인 지식 및 학문은 전 인류를 위한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 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나바네뎀 필레이(Navanethem Pillay),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2008)

서면 의견서

(Written statements)

ECOSOC 시민 사회 단체의 전문가 견해, 아이디어 및 제안들을 필요로 하고, 조언을 받고자 한다. 이런 이유에서, ECOSOC은 NGO가 이사회에 여러 영역별 주제와 관련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의안 1996/31은 서면 의견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일반 협의적 지위 및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는 자신이 특별한 역량을 가진 주제에 대해 이사회에 업무와 관련하여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배포될 것이다.”

- ECOSOC 결의안 1996/31,
part IV, paragraph 30

서면 의견서는 CSO Net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41 page 참조).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바, 그 이유는 일부 행사의 경우, 서면 의견서에 관하여 다른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COSOC에 제출하는 서면 의견서의 경우, 의견서에 허용되는 단어 수는 각 NGO가 가진 협의적 지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결의안 1996/31에 따라, 의견서의 허용 단어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 일반 협의적 지위를 가진 기구: 최대 2,000 단어
- »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가진 기구: 최대 500 단어

각 기구 별로 오직 한 개의 의견서 제출만 허용된다.

명부상 협의적 지위(roster consultative status)를 가진 기구는 유엔 사무총장이 ECOSOC 의장 또는 산하 NGO 위원회 (Committee on NGOs)와의 협의 하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 또는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 또한 자신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주제에 관하여 기능 위원회를 포함한 ECOSOC 위원회와 산하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의 허용 단어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 일반 협의적 지위를 가진 기구(*general consultative status*): 최대 2,000 단어
- »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가진 기구(*special consultative status*): 최대 1,500 단어

각 기구 별로 오직 한 개의 의견서 제출만 허용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결의문 1996/31를 참고하면 된다. 기능 위원회 명단과 관련 연락 정보가 아래 연락 정보 섹션 (the Contacts section)에 제시되어 있다.

NGO는 또한 다른 기구들과 함께 공동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홈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페이지의 하단의 공동 제출(Joint Submission)란 에서 가능하다.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휴를 원하는 기구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다.





구두 의견서 (Oral statements)

결의문 1996/31에 명시되었듯이, 일반 또는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는 회의가 개최 되는 장소인 뉴욕의 유엔 본부 또는 제네바의 유엔 사무소에서 ECOSOC 연례 회의에 구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연례 회의는 두 도시에서 번갈아 열린다. 각 기구 별로 오직 한 개의 구두 의견 제출만이 허용되며 구두 의견의 주제는 해당 연도에 이사회가 중점을 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NGO는 구두 의견을 직접 이사회에서 또는 산하 기관에서 발표할 수 있다. 명부상 협의적 지위를 가진 기구들은 유엔 사무총장, ECOSOC 그리고/또는 산하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구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그 동안 연례 각료급회의(*the Annual Ministerial Review*)에서 다뤄진 주제는 다음과 같다.

2011 - 교육

2010 - 양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2009 - 전지구적 공중 보건

2008 - 지속 가능한 개발

2007 - 빈곤 및 기아 퇴치

NGO는 또한 구두 의견서를 기능 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무국에 연락하면 된다.

NGO 담당과 (The NGO Branch)는 NGO에게 ECOSOC에 제출하는 구두 의견서의 마감 기한을 통지하게 될 것이다. 이사회의 연례 회의의 의제 초안 (draft agenda)도 함께 제공될 것이다. 하지만 ECOSOC 의장이 회의의 시간 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때문에, NGO 담당과가 각 기구의 의견서 발표를 위한 확실한 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발언자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 의장의 권한에 속한다.

ECOSOC의 다른 NGO 조직들과의 공동 의견서 발표 또한 권장된다. 그것은 공동 의견서 발표를 통해 그 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전문가 의견을 ECOSOC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뉴욕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에서 구두 의견을 발표한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는 다음과 같다.

- » 액션 에이드(Action Aid)(특별 지위, 1991)
- » 시비쿠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일반 지위, 2004)
- » 비정부기구 회의(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GO)(일반 지위, 2002)
- » 국제헬프에이지(HelpAge International)(일반 지위, 1995)
- » 국제여성연맹(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일반 지위, 1947)
- » 아랍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위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Arab-Israeli Reconciliation)(특별 지위, 2006)

- »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일반 지위, 1973)
- » 복 되신 동정 마리아의 국제 수녀회(International Presentation Association of the Sisters of the Presenta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특별 지위, 2000)
- » 국제무역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일반 지위, 2007)
- » 전국평생교육권신탁기금(National Right to Life Educational Trust Fund)(특별 지위, 2003)
- » 남북 21 재단(Nord-Sud XXI - North-South XXI)(특별 지위, 1995)
- » RMP 연구소(Rambhau Mhalgi Prabodhini)(특별 지위, 2006)
- »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특별 지위, 2003)
- » 도시 및 지방자치 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일반 지위, 1947)
- »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WSPA)(특별 지위, 1971)

유엔에서 NGO 행사 조직하기

NGO는 ECOSOC 기능 위원회가 조직하는 주요 행사와 관련된 부대 행사를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다. 부대 행사를 조직하기 원하는 경우, ECOSOC의 각 기능 위원회의 특정 행사 주최 측과 접촉하여 아이디어를 상의해야 한다. 부대 행사 조직으로 선정이 되면, 그 행사에 관하여 해당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1년 2월에 열린 여성지위위원회의 55차 회의기간 중에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the WILPF)(일반 협의적 지위, 1948)과 원보이스 운동(the One Voice Movement)은 유엔 여성(UN- Women)과 유엔 아일랜드(Ireland) 상주대표부와의 협의 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간격을 극복하는 성, 기술 및 평화 구축(Gender, technology and peace- building: bridging the Israel-Palestine divide)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조직

하였다.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 (명부상 협의적 지위, 1981)은 유엔 아동기금(UNICEF)와 유엔 소녀교육사업(UNGEI)과 함께 “소녀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 기술(Empowering girls: education and technology)”이라는 주제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했다.



협약적 지위 신청 절차

(The application process)

ECOSOC은 국제적, 지역적, 소 지역 및 국가적 비정부, 비영리, 공공 또는 자원 봉사 조직들과 협약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ECOSOC과의 협약적 지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 해당 NGO의 업무가 ECOSOC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메커니즘과 민주적으로 채택된 헌장(정관)을 갖추어야 한다.
- ▶ 집행 책임자가 존재하고 본부가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
- ▶ 협약적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 후 최소 2년이 지난 조직이어야 한다.
- ▶ 소속 구성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 ▶ 대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책무성에 관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 ▶ 기부금 및 기타 지원금, 그리고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미 ECOSOC의 협약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와 제휴한 NGO는 자신의 업무 활동이 유엔의 목표와 목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ECOSOC의 NGO 위원회에서 협약적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협약적 지위를 신청하는 기구는 유엔 사무국이 신청 접수를 받은 일자 당시에 최소한 2년 이상 존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 ECOSOC 결의안 1996/31,
part IX, paragraph 61(h)

ECOSOC의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6개의 간단한 단계:
신청 절차의 각 단계는 뒤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신청, ECOSOC의 검토 및 승인까지의 절차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NGO 조직 프로필 작성
2. 설문지 및 관련 문서를 포함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3. 신청서와 문서 제출이 완결되었는지에 관하여 NGO 담당과의 신청서 1차 검토
4. 매년 1월에 열리는 정기 회의 또는 5월에 열리는 속개 회의 기간 동안 ECOSOC의 NGO 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
5. NGO 위원회에 의한 추천 권고
6. 매년 7월 신청서 승인 여부에 대한 ECOSOC의 결정 완료

1. NGO 조직 프로필 작성

- a. NGO 담당과 홈페이지 (NGO Branch homepage) (Contacts 연락 정보 참조)로 가서, 왼쪽 메뉴에서 “협의적 지위 신청(Apply for consultative status)”을 클릭한다.
- b.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프로필이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오(Click here if you are not sure if your organization already has a profile)”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한다.
- c. 이미 작성된 프로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오른쪽 메뉴에서 “조직 프로필 추가(Add organizational profile)”를 클릭한다.





- d. “새로운 프로필 작성(Create new profile)”을 클릭한다.
- e. 새로운 프로필 (New profile)서식을 신중하게 작성한다. 빨간 색 별표(*)가 표시된 모든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다른 항목은 선택 사항이다. “주요 목적 및 로그인 상세 항목(Main objective and login details)”에서 “주요 목적(Main objective)”으로서 “협의적 지위 신청 (Applying for consultative status)”을 선택한다. 프로필이 한번 이상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f. 이 단계까지 마치고 NGO 담당과에서 프로필을 승인 받게 되면, 승인통지와 더불어 웹사이트의 로그인 정보를 받게 된다. 조직 프로필이 승인된 후, ECOSOC의 협의적 지위를 위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계속할 수 있다. 조직 프로필 승인에는 며칠간이 소요된다.

제공된 이메일 (e-mail)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고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온라인 신청서 (online application) 제출

협의적 지위 신청서는 위원회의 검토를 희망하는 해당 연도 6월 1일 이전까지 온라인에서 탑재 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유엔의 2개 공용어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할 수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관련 문서 또한 전자파일로 탑재 되어야 하며, 그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 » 해당 조직의 헌장/정관 그리고/ 또는 규정/세칙 및 관련 문서들의 개정안의 모든 사본(ECOSOC 결의안 1996/3의 paragraph 10)
- » 등록증 사본. 결의안 1996/31에 따라, 해당 조직은 유엔 사무국이 신청서를 받은 일자 당시에 최소 2년 간 존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재무제표 및 연례 보고서 사본
- » 간행물 및 최근 기사 또는 성명서의 샘플, 그리고 가능한 면, 조직도

간행물을 제외하고 모든 제출 문서는 또한 영어 또는 프랑스

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신청서 제출 :

- NGO 담당과 홈페이지로 가서 “iCSO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Login for the iCSO database)”을 클릭하여 로그인 한다.
-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 탭을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신청서 제출(Submit application)”을 클릭 한다.





- c. 신청서를 작성한다. 어떤 항목도 비워두지 않는다. 간단하고 핵심 내용만 기입하도록 한다. 신청과정에서 기입한 내용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소 20분에 한 번씩 저장한다.
- d. 신청서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경고하는 빨간 텍스트(red text)가 화면에 표시된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제출 (Submit)”을 클릭한다.

- e.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필요한 제출 문서가 모두 탑재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문서(Documents)” 탭에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문서는 온라인에서 탑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신청서 체크리스트(checklist)

- 모든 질문에 답변한다.
어떤 질문도 빈 공간으로 남기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인 경우, “해당없음 (not applicable)”이라고 기입한다.
- 명확하고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기입한다.
- 모든 제출 문서와 번역 문서들을 기억한다.
스캔된 문서는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 보통 글자체를 사용하되, 대문자와 기호(상징)는 사용하지 않는다.
- 국가 또는 영토를 언급하는 경우, 정확한 유엔 용어를 사용한다.
유엔 용어 웹사이트 참조(<http://unterm.un.org/>).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Contact Us” 링크를 클릭하여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NGO담당과에 연락한다.

2. 신청서 1차 검토

경제사회국(유엔 사무국)의 NGO 담당과 (NGO Branch)는 ECOSOC NGO 위원회가 차기 회기에서 검토를 하도록 제출되기 전에 초기단계로서 신청서를 검토한다.

NGO 담당과는 유엔 체제, 회원국 및 시민 사회의 대표자들에게 NGO와 관련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NGO 위원회를 지원하며 신청서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NGO 담당과의 업무는 유엔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행정 및 보안 절차 감독부터 유엔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한 NGO는 실질적 공헌에 대한 훈련, 정보 및 조언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6월 1일부터 NGO 위원회의 차기 회기 사이에 NGO 담당과는 신청서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력한다. NGO 담당과는 신청서의 완성도와 명확성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의 목적은 NGO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 NGO 위원회가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신청

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신청서가 완료 되면, 해당 NGO는 NGO 위원회의 위원국들이 신청서를 검토하게 되는 차기 회의에 관한 공지 서한을 받게 된다.

4. NGO 위원회의 신청서 검토

NGO 위원회 (The Committee on NGOs)는 ECOSOC의 산하 기관으로서, 균형적인 지리적 배분 원칙에 따라 선출된 19개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 5석, 아시아 국가 4석, 동유럽 국가 2석, 중남미 국가 4석,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지역 국가 4석으로 구성된다.

협의적 지위 신청이 검토되는 회의 동안, 신청서 제출 해당 기구의 두 명 미만의 대표들이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대표들은 NGO 위원회가 제기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위원회의 회의 동안 대표들이 참석한 것이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NGO 대표들의 참석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신청서 승인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신청서 제출 NGO들이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에 항상 업로드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위원회 회기 동안 신청서 검토와 관련하여 사무국 및 위원회 위원국과의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NGO 담당과는 NGO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답변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시스템 (web-based system)을 제공한다. 유엔 사무국은 시스템에서 수신한 답변을 검토하고 이를 NGO 위원회 위원국들에게 전달한다. 위원회가 NGO에 제기한 질문들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는 이 시스템에 게시된다.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신청서 검토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NGO의 답변도 이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추천 권고

NGO 위원회는 협의적 지위를 신청한 NGO가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1월과 5월 매년 2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추천서는 7월에 열리는 ECOSOC 고위급 회의에서 협의적 지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ECOSOC에 전달된다.

신청서가 검토된 모든 NGO에게 공식 통보 (official notification)가 이루어지고, 위원회의 추천서에 대한 공지를 받게 된다. NGO 위원회의 추천서는 보고서로서 출판되며, NGO 담당과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신청과 관련한 모든 보도 자료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각 회기마다(1월과 5월) 이루어진 위원회의 추천은 ECOSOC이 매년 7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7월 이사회의 연례 회의가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해당 NGO의 ECOSOC의 협의적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세 가지 협의적 지위 범주(일반, 특별, 또는 명부상) 중 한 가지 지위를 추천하거나, 또는 해당 NGO가 해명하거나 답변을 하도록 기다리면서 차기 회의까지 신청서 검토를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NGO는 질문과 해명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NGO에게 제기된 질문들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통지되기 때문에 NGO 프로필의 모든 연락처, 특히 주된 이메일 주소를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 가지 종류의 협의적 지위가 기구의 형태를 기반으로 NGO에게 부여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협의적 지위 (General Status)는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한 사회 분야를 대표하는 NGO에게 부여된다. 이런 NGO의 업무 영역은 ECOSOC 및 산하 기관의 의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이슈를 포함한다.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고, 상당히 규모가 크며 안정적인 것으로 기반을 갖춘 국제 NGO가 포함된다.

특별 협의적 지위 (Special status)는 ECOSOC 활동 분야의 일부 영역에서 특별한 역량과 관련성을 갖추고 있는 NGO에게 부여된다. 이런 NGO는 규모가 보다 작고 최근에 설립된 경우가 많다.

명부상 협의적 지위 (Roster status) 는 보다 좁은 범위 그리고 /혹은 기술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ECOSOC 또는 산하 기관의 업무에 비정기적으로 유용한 공헌을 하는 NGO에게 부여된다.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보도 자료 (press releases)를 통해 위원회의 추천과 ECOSOC의 결정 사항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Press Releases

- Feb 4, 2011 ECOSOC/6460**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commends Special Consultative
- Feb 4, 2011 ECOSOC/6460 ONG 714**
COMITÉ DES ONG: BATAILLE DE PROCÉDURE AUTOUR DE LA DEMANDE D'ACCREDITATION DE «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
- Feb 3, 2011 ECOSOC/6459**
Continuing 2011 Session,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commends
- Feb 3, 2011 ECOSOC/6459 ONG 713**
MALGRÉ UNE SÉANCE INTERROMPUE PAR DE NOMBREUX PROBLÈMES TECHNIQUES, LE COMITÉ DES ONG
- Feb 2, 2011 ECOSOC/6458**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commends Special Consultative Status
- Feb 2, 2011 ECOSOC/6458 ONG 712**
LE COMITÉ ACCORDE LE STATUT CONSULTATIF À 11 ONG ET REPORTE L'EXAMEN DES DEMANDES DE 19 AUTRES DONT « HOMOSEXUELLES INITIATIVE WIEN »
- Feb 1, 2011 ECOSOC/6457**
Committee on NGOs Grants Consultative Status to 17 Civil Society Groups,
- Feb 1, 2011 ECOSOC/6457 ONG 711**
LE COMITÉ DES ONG RECOMMANDE À L'ECOSOC D'ADOPTER LE STATUT CONSULTATIF SPÉCIAL À DIX-SEPT ORGANISATIONS
- Jan 31, 2011 ECOSOC/6456**
Opening 2011 Session of Committee on NGOs, Officials Hail 'Unprecedented' Surge

6. ECOSOC의 최종 결정

ECOSOC과의 협의적 지위는 결의문 1996/31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ECOSOC은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의 의석은 지리적 배분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14석, 아시아 국가 14석, 동유럽 국가 6석, 중남미 국가 10석 그리고 서유럽 및 기타 지역 국가 13석으로 배분된다. ECOSOC은 신청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갖고 있다.

NGO 위원회가 추천서를 작성하고 난 후, ECOSOC은 보통 같은 해 7월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를 검토한다. 연례 회의 동안, ECOSOC은 NGO 위원회의 두 차례의 회의 보고서를 고려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NGO의 협의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오로지 ECOSOC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이루어지고, 해당 NGO에게는 곧 통지서가 발송된다.





4년 보고서

(Quadrennial reports)

일반 협의적 지위와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가진 기구들은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이사회 NGO위원회에 그 활동, 특히 유엔 업무에 제공한 지원 활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4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한다.

- ECOSOC 결의안 1996/31,
part IX, paragraph 61(c)

NGO에게 협의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유엔 업무에 대한 기여이다.

일단 NGO가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면, ECOSOC NGO 위원회는 ECOSOC의 업무에 대한 해당 NGO의 기여 활동을 모니터 한다.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는 4년에

한 번씩 NGO 담당과를 통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그 내용은 기구의 활동, 특히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기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들을 포함하여 유엔 활동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간단한 서술을 포함해야 한다.

4년 보고서의 서식 및 내용에 대한 지침은 유엔 4년 보고서 홈페이지 (www.un.org/ecosoc/ngo/quadrepo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 옵션 1 (권장): NGO 담당과 웹사이트에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NGO 담당과 홈페이지 (NGO Branch homepage)로 가서 “ICSO 데이터베이스 로그인(Login for the ICSO database)”을 클릭하여 로그인 한다.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 탭을 클릭한 후, “4년 보고서(Quadrennial reports)”를 클릭하고 “업데이트 보고서(Update reports)”로 들어 간다. 그리고 관련 항목들을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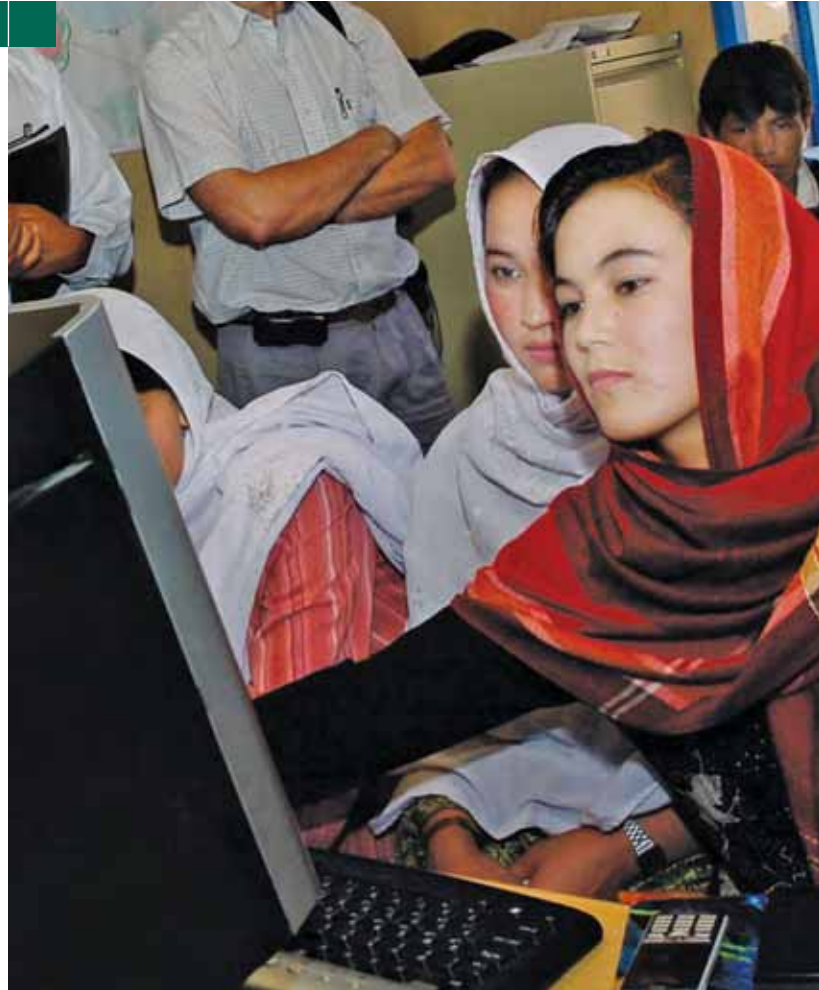
» 옵션 2: NGO 담당과의 이메일 주소 quadreports@un.org로 워드 (Word) 서식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4년 보고서의 마감 기일 6개월 전에, NGO 담당과는 NGO에게 보고서의 예정된 마감 기일과 마감 기일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상기하는 통지를 보낸다.

NGO는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고 프로필(the Profile) 탭에서 연락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기구의 연락 정보가 현재 최신의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점을 유의한다.

4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ECOSOC 결의안 2008/4 “4년 보고서 절차의 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quadrennial reporting procedures)”에는 제 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NGO에게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관련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 보고서 마감 기일이 지난 1 개월 후, NGO 담당과는 해당 NGO에게 미 제출 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일까지 요청하는 통지를 보낸다.
- ▶ 1월 1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NGO 담당과는 해당 NGO에게 5월 1일까지 미 제출 보고서를 요청하는 최종 통지를 보낸다. 해당 일시까지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NGO 위원회는 1년 동안 해당 NGO의 협의적 지위를 즉각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 ▶ ECOSOC이 해당 NGO의 협의적 지위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NGO에게 그 정지에 대해 통보하고, 이와 함께 다음 해 5월 1일까지 4년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한다.
- ▶ 해당 기간 동안 NGO 담당과에 보고서가 여전히 제출되지 않으면, ECOSOC NGO 위원회는 해당 NGO의 협의적 지위 철회를 권고하게 된다.





연락 정보

및 유용한 링크

NGO 담당과(NGO Branch)

ECOSOC 지원조정 사무소(Office of ECOSOC Support and Coordination)

유엔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주소: One United Nations Plaza, Room DC1-1480,
New York, NY 10017

전화: 1-212-963-8652 팩스: 1-212-963-9248

NGO 분과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홈페이지에서 “Contact us”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웹사이트 : <http://www.un.org/ecosoc/ngo>

링크 :

- CSO net: www.un.org/ecosoc/csonet
- 4년 보고서: www.un.org/ecosoc/ngo/quadreports

- UN 구역 통행증: www.un.org/ecosoc/ngo/passes
- 시민 사회 단체 데이터베이스: <http://esango.un.org/civilsociety>
- 기능 위원회: <http://www.un.org/ecosoc/ngo/comissions>

ECOSOC NGO 위원회(ECOSOC Committee on NGOs)

주소: One United Nations Plaza, Room DC1-1480,
New York, NY 10017

전화: 1-212-963-8652 팩스: 1-212-963-9248

위원회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NGO 분과 홈페이지에서 “Contact us” 링크를 클릭하십시오(위의 내용 참조).

웹사이트 : <http://www.un.org/ecosoc/ngo/committee>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주소: 2 United Nations Plaza, Room DC2-2220,
New York, NY 10017 USA

팩스: 1-212-963-4260

CSD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홈페이지에서 “Contact us”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www.un.org/esa/dsd/csd/csd_index.shtml(CSD 홈페이지)

http://www.un.org/esa/dsd/dsd/dsd_faqs_mg.shtml
(NGO 참가)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주소: 2 United Nations Plaza, Room DC2-1250,
New York, NY 10017, USA

팩스: 1-212-963-3463

CSW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홈페이지에서 “Contact us”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www.un.org/womenwatch/daw/csw/index.html>
(CSW 홈페이지)

www.unwomen.org

<http://www.un.org/womenwatch/daw/ngo/index.html>
(NGO 참가)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주소: 2 United Nations Plaza, Room DC2-1320,
New York, NY 10017 USA

팩스: (DSPD) 1-212-963-3062

CSW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홈페이지에서 “Contact us”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social.un.org/index/CommissionforSocialDevelopment.aspx> (CSocD 홈페이지)

<http://social.un.org/index/CivilSociety.aspx> (NGO 참가)

원주민 문제에 대한 상설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주소: 2 United Nations Plaza, Room DC2-1454,
New York, NY 10017, USA

전화: 1-917-367-5100 팩스: 1-917-367-5102

E-mail: indigenous_un@un.org

웹사이트:

<http://www.un.org/esa/socdev/unpfii/index.html>

인구개발위원회(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주소: 2 United Nations Plaza, Room DC2-1950,
New York, NY 10017 USA

전화: 1-212-963-3179 팩스: 1-212-963-2147

웹사이트:

<http://www.un.org/esa/population/cpd/aboutcom.htm>

http://www.un.org/esa/population/cpd/ngopart_44.htm (NGO 참가)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주소: 1 United Nations Plaza, Room DC1-1245,
New York, NY 10017, USA

전화: 1-212-963-3401 / 1-917-367-4244

팩스: 1-917-367-3186

E-mail: unff@un.org

웹사이트:

<http://www.un.org/esa/forests/>

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주소: Civil Society Team,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Vienna International Centre, P.O. Box
500, Room D1474, A-1400 Vienna, Austria

전화: (UNODC) Vienna Office: 43-1-26060

팩스: (UNODC) Vienna Office: 43-1-263-3389

E-mail: ngo.unit@unodc.org (Civil society team)

웹사이트:

http://www.unodc.org/unodc/en/commissions/CCP_CJ/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주소: Civil Society Team,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Vienna International Centre, P.O. Box
500, Room D1474, A-1400 Vienna, Austria

전화: (UNODC) Vienna Office: 43-1-26060

팩스: (UNODC) Vienna Office: 43-1-263-3389

E-mail: ngo.unit@unodc.org (Civil society team)

웹사이트:

<http://www.unodc.org/unodc/en/commissions/CND/>

과학기술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주소: Palais des Nations, 8-14, Av.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전화: (UNCTAD) 41-22-917-1234

팩스: (DSPD) 41-22-917-0057

E-mail: stdev@unctad.org

웹사이트:

<http://www.unctad.org/cstd>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

주소: 2 United Nations Plaza, Room DC2-1670, New

York, NY 10017, USA
전화: 1-212-963-4849 팩스: 1-212-963-4569
E-mail: statcom@un.org
웹사이트:
<http://unstats.un.org/unsd/statcom/commission.htm>

인권 위원회

주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alais Wilson, 52 rue des Pâquis, CH-1201 Geneva, Switzerland
전화: +41 22 917 965 (NGO Liaison Officer)
E-mail: civilsocietyunit@ohchr.org
웹사이트: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ngo.htm> (인권위원회 NGO 참가)



ECOSOC은 어떤 조직인가?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은 14개 유엔 전문 기관 및 기능 위원회, 그리고 5개 지역 위원회의 경제, 사회 및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주요 기관이다. 국제 경제 및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회원국 및 유엔 시스템에 제공되는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핵심 포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협약적 지위란 무엇인가?

협약적 지위는 유엔과 NGO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인 프레임워크이다. 결의안 1996/31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경제사회이사회 또는 관련 기관들이 협약적 약정이 체결된 분야에 대한 특별한 역량을 가진 NGO 조직으로부터 전문가 정보 또는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 지역, 하위 지역 및 국가 NGO 조직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협약적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 ECOSOC 결의안 1996/31, 파트 II, 단락 20

왜 NGO는 협약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가?

ECOSOC은 NGO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경청되고, 관련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협약적 지위를 가진 NGO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 받는다.

- » 국제 회의 및 행사 참여
- » 국제 행사에서 서면 및 구두 의견서 발표
- » 부대 행사 조직
- » 유엔 구역 출입
- » 네트워크 형성 및 로비 활동 기회